

[별표 1]

회원준수사항(제49조 관련)

1. 회원의 자격

가. 춘천시 내 초, 중, 고, 대학의 탁구팀, 동호회조직(클럽) 등에 가입하고 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협회원으로 한다.

나. 개인회원(1인)은 다음의 경우, 1회에 한하여 협회원이 될 수 있다.
단, 당해연도에 한한다.

① 춘천시에 전입하여 클럽을 결정하지 않은 자

② 현재 소속된 클럽이 없는 자

나. 본회의 협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는다.

① 본회가 주최·주관하는 모든 시합을 참가할 수 있다.

② 본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탁구협회에서 주최·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며, 시 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하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다.

다. 본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①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

② 춘천시에 거소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

③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고 회원의 임무를 준수할 사람

④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가) 관내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(직접 근무처)

나)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

다) 관내 탁구장에서 코치로 일하거나 본인 탁구장을 운영하는 사람

라.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회원에서 제명한다.

① 본회 및 본회 회원에게 민.형사상에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

② 본회 규정 및 상벌 규정에 의거 자격정지 및 제명 처리되어 복권되지 않은 사람

2.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선수의 자격을 가지며, 부별 연령제한은 다음과 같다. (나이는 민법에 따른 만 나이로 한다)

가. 동호인부: 20세 이상

나. 실버부: 여성은 60세, 남성은 65세 이상

3. 동호인조직(클럽)의 자격

가. 본회는 정 클럽과 준 클럽으로 나뉘어 운영한다. 인원의 기준은 매년 초 등록한 협회원 수로 한다.

① 20인 이상의 협회원을 둔 단체를 정 클럽이라 한다.

②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협회원을 둔 단체를 준 클럽이라 한다.

③ 정 클럽의 회장 등은 본회의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.

④ 본회에 동호인조직(클럽)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클럽가입신청서(별첨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신규 동호인조직(클럽)은 가입신청 시 본회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한다.

⑥ 본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자유이며 가입비는 돌려주지 않으며 제3자에게 넘겨주지도 않는다.

나. 본회에 등록한 협회원은 소속 클럽 변경 시 협회에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.

4. 협회비

가. 협회비는 1/4분기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나. 가입비는 최초(처음) 등록 시 1회 10,000원/인을 납부하여야 한다.(개인(1인)회원 포함)

다. 연회비는 매년 1회 10,000원/인을 납부하여야 한다.

.① 개인(1인)회원 20,000원/인을 납부하여야 한다

라. 강원도 등록비

① 동호인(클럽)등록 단체(정클럽,준클럽) 분담 납부

② 강원도등록비 : 1,000,000원

라. 협회비 등은 협회에서 안내하는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.

마. 전문체육 육성학교는 가입비 및 협회비를 면제한다.

5. 경기 규정

가. 경기 규정은 최신 ITTF Statutues(탁구 규정)과 각 대회요강을 원칙으로 한다.

- 나. 전문, 엘리트 선수는 대한탁구협회의 모든 규정을 적용한다.
- 다. 생활체육 경기 규정 및 대회 요강은 임의 조정 할 수 있다.
- 라. 본회의 경기에 있어 탁구 규정을 고의적으로 악용할 경우, 모든 경기를 몰수패 할 수 있다.
- 마. 본회의 부수 조정은 부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6. 인터넷 규정

- 가. 본 협회의 모든 인터넷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적용한다.
- 나. 회원가입 및 이용 제한은 별도로 구분을 두지 않는다.
- 다. 본회의 대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① 회원가입은 본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 - ② 상호 간의 비방 또는 욕설은 금지한다.
 - ③ 탁구 관련(협회원) 이외의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다.
 - ④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.
 -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 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.

7. 상벌 규정

- 가. 본회의 발전에 직, 간접적으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고 규정에 위배 된 행위를 하였을 때는 본회 소속의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.
- 나. 포상 및 징계는 사회 통념상에 위배 되지 않는 선에서 행한다.

